

공정위, 추석 명절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운영

-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지원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50일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를 설치·운영한다.

< '26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>

운영 기간	운영 지역	신고 방법
'26.8.5. ~ '26.9.23. (50일간)	수도권(7개), 대전·충청권(2개), 부산·경남권(1개), 광주·전라권(1개) 대구·경북권(1개) * 불임 참조	우편, 팩스, 인터넷, 전화상담

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,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.

신고센터는 수도권(7개), 대전·충청권(2개), 부산·경남권(1개), 광주·전라권(1개), 대구·경북권(1개) 등 전국 5개 권역 12개 소(올해 3월에 개소한 경인사무소 2개소 추가)에 설치·운영된다.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‘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’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 신고는 우편, 팩스, 누리집(www.ftc.go.kr)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.

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

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,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.

아울러,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경제인협회, 대한건설협회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,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한국공정경제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,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
참고로,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182건 약 232억 원을 지급 조치하였으며, 23,76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약 3조 4,828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.

< '26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>

미지급 대금 지급			대금 조기 지급		
상담 건 수	업체 수	금액	원 사업자 수	업체 수	금액
330건	182개	약 232억 원	106개	23,766개	약 3조 4,828억 원

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

- <불임> 1. 권역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 현황
2.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(예시)

담당 부서	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	책임자	과 장	이태희 (044-200-5002)
		담당자	사무관	이호섭 (044-200-5019)

<붙임 1>

권역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 현황

설치 권역	각 권역별 신고센터		담당 업무	전담(자) 전화번호(FAX)
수도권 (7개소)	서울지방 공정거래 사무소	건설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 (건설)	02-2110-6132 (FAX 02-2110-0654)
		제조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 (제조)	02-2110-6189 (FAX 02-2110-0655)
	경인지방 공정거래 사무소	건설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 (건설)	031-8090-4040 (FAX 031-8090-4058)
		제조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 (제조)	031-8090-4060 (FAX 031-8090-4078)
	분쟁 조정 협의회	공정거래조정원	사건조정 및 상담	1588-1490 (FAX 02-6363-9119)
		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	사건조정 및 상담	02-549-2105~6 (FAX 02-516-5360)
		중소기업중앙회	사건조정 및 상담	02-2124-3131~3 (FAX 02-780-2448)
대전·충청권 (2개소)	공정위 하도급조사와		신고센터 총괄 및 상담·안내	044-200-5019 (FAX 044-200-5253)
	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42-481-8020~1 (FAX 042-481-8023)
부산·경남권	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51-460-1041~8 (FAX 051-460-1004)
광주·전라·제주권	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62-975-6841~5 (FAX 062-975-6800)
대구·경북권	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53-230-6341~4 (FAX 053-742-9150)

<붙임 2>

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(예시)

-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장기(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)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, 어음 할인료 ·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
-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 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
-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